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562975 판결 [이득상환금]

전 문

원 고 A

可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 종결 2016. 6. 30.

판결 선고 2016.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 C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경영권 및 주식 275만 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23. C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양수도금의 일부로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국민은행 강남역종합금융센터, 발행일 2015. 7. 23.,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된 소지인 출급식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E,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5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수표가 2015. 8. 5. 수표발행의뢰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사취수표로 등록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이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수표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C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이 사건 수표상 권리를 정당하게 이전받았다. 설령 당시 C가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었던 사람이므로,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권리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보조참가인의 주장

- 1) 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중 일부로 5억 원을 법무법인(유한) 바른(이하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한다)에 예치(에스크로)하기로 하였고, 위 에스크로 업무를 기업인수업자인 G와 공인회계사인 H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G와 H는 2015. 7. 23. 보조참가인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자기앞수표 형태로 인출하였고, 위 자기앞수표가 바로 이 사건 수표이다.
- 2) 법무법인 바른은 원고에게 5억 원이 에스크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위탁금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것은 비정상적인 경위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 3) 또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할 권한이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수표법 제63조), 그 경우 수표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1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이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 출급식인 때에는 그 수표를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표법 제21조).

나.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을나 제7호증의 기재, 증인 H, C,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보조참가인은 F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H와 G에게 인수 추진 업무의 진행을 의뢰하였는데, H와 G는 보조참가인에게 F 인수 자금 중 일부를 에스크로해야 인수 추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서 5억 원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2015. 7. 22. 인수 자금 에스크로를 위해 H와 G에게 보조참가인의 개인도장과 통장을 맡겼고, H는 2015. 7. 23. 오전에 피고의 강남역종합금융센터에서 보조참가인 계좌에서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는데, 위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수표이다.

2) H는 위 인출 직후 G에게 법무법인 바른에 에스크로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G는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직후 지인인 I로부터 D의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수표를 인수자금으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I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네주었다.

3) I는 이 사건 수표를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2015. 7. 23. D 주식의 양수대금 중 일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

4) I는 G에게 1주일 이내에 5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G는 2015. 7. 23. 일단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법무법인 바른 에 에스크로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어떠한 증빙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보조참가인은 점점 G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2015. 7. 31.까지도 G가 에스크로에 관한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자 보조참가인은 2015.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피사취수표로 신고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수표를 I에게 교부하였고, I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C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자료가 없는 이상, I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건네받은 C는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여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C가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C로부터 소지인 출급식 수표인 이 사건 수표를 교부의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중대한 과실 없이 선의로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구체적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할 권한을 상실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액 500,000,000원의 지급을 면하게 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을 요청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김선희, 판사 정지원